

##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3개시·도(충북, 충남, 대전) 분담금으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기금에서 운영비가 2003년도부터 지원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의안전문 :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제2059호, 1993.5.10)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6 생략

7.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8~14 생략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기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제35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⑩ (생략)